

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

의안 번호	6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 6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농업의 기술화·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☐ 주요골자

- 가. 시 상 명 : 파주시농업인대상
- 나. 시상부문 : 쌀증산부문외 4개부문
- 다. 수상대상 : 각부문별 1인 또는 1단체
- 라. 수상자격 : 파주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사업장이 있고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
- 마. 수상후보자의 추천 : 읍·면·동장 및 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, 파주축협, 산림조합, 인삼조합,농업기반공사,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,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 등
- 바. 심의회의 설치 :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대상심의회를 설치(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)
- 사. 수상자의 결정 : 파주시농업인대상심의회에서 심사 결정
- 아. 시 상 :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하고 ,
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 및 부상 수여, 재원은 시비로 지급

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·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상의 명칭)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농업인대상(이하 "상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 (시상부문과 인원)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쌀증산부문
2. 과수·화훼부문
3. 채소·특작부문
4. 과학영농부문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
5. 축산, 수산, 임업부문

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.

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수상후보자의 자격) ①수상후보자는 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.

1. 농업인 : 첨단 기술농업, 고품질 농업, 수출농업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
2. 생산자단체 :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

②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.

③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.

제5조 (수상후보자의 추천)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이나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·면·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,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, 파주시 산림조합장,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출장소장, 농업기반공사파주시부장,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장,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1. 추천서 1통
2. 공적조서 1통
3. 단체 소개서 (개인은 이력서)1통
4. 기타 공적 증빙 자료

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심의회의 설치)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대상심의회(이하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

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 (수상자의 결정) ①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한다.

제8조 (심사기준) ①심의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한다.

제9조 (현지조사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②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심사결과의 통지) 심의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시상)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

③재원은 시비로 한다.

제12조 (특전)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내·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.
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농축산과 940-4564
입안자	농축산과장	박신규
	농정담당	안상훈
	담당자	신승화

2.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농업의 기술화·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□ 주요골자

- 시상명 : 파주시농업인 대상
- 시상부문 : 쌀 증산부분의 4개 부문
- 수상대상 : 각 부문별 1인 또는 1단체
- 수상자격 : 파주시 관할구역 내에 농업사업장이 있고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
- 수상후보자의 추천 : 읍·면·동장 및 농업중앙회파주시지부, 파주축협, 산림조합, 인삼조합, 농업기반공사,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,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등
- 심의회의 설치 :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대상심의회를 설치(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)
- 수상자의 결정 : 파주시농업인대상심의회에서 심사 결정
- 시상 :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하고,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 및 부상 수여, 재원은 시비로 지급

□ 검토내용

- 동 제정 조례안은 농업의 기술화와 고품질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적법타당하며
- 조례안 제3조에서 시상부문을 쌀 증산부문, 과수·화훼부문, 채소·특작부문, 과학영농부문, 축산수산, 임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
- 수상자의 선정은 심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심의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짐
- 안 제11조에서 정한 시상에서는 “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”고 규정하여 예산을 수반하는 시상금의 내역이 분명치 못한 점이 있음
(경기도 농어민 대상 : 각 부문별 500만원)
- 참고로 파주시에서 일반 시민에 수여되는 문화상의 경우 시상금이 금 20돈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.